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06
----------	-----------

제출연월일	2012. 02.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인력센터를 통하여 농작업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지원함

나. 군수, 인력센터,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서 일일 근로시간을 마감한 사람

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재해보험, 안전용품제공 등

마.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농작업 참여 구인신청은 사전에, 교통비는 농작업 완료후에 신청

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보조금 관련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4호·제8호·제9호

나. 예산조치 : 40,000천원(교통비 지원, 재해보험가입, 안전용품제공)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2.01.30. ~ 02.19.):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인력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센터 및 참여자의 책무) ① 인력센터에서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마감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2. 농작업에 따른 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공제)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3.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작업 능력향상 교육시 안전용품 제공 등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2~3일 전에 인력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임금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들은 농작업 종료 후 인력센터에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재해보험은 일·주·월 단위로 작업일 전에 가입하여야 하고, 교통비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인력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준비) 군수는 농작업 참여자들을 설립위원으로 위촉하여 인력센터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 (지원범위)

- ①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 ② 농작업에 따른 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공제)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 ③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작업 능력향상 실습 교육시 안전용품 제공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경제과장 이 재 영